

**식품의약품안전청 명령**

불기 2556(서기 2013년) 제331호

화장품 GMP 인증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청장이 서명하는 권한에 관하여

화장품에 대한 GMP(우수제조기준) 인증서 발급절차를 보다 탄력적이고, 편리하고, 신속하게 또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,

불기 2550년(서기 2007년) 왕령 제14조 및 제16조와 불기 2550년(서기 2007년) 정부행정법 (제7호)에 의하여 개정된 불기 2534년(서기 1991년) 정부행정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권한에 따라,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공고한다:

식품의약품안전청 부총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신하여,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화장품 및 유해물질관리국에서 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화장품의 우수제조기준(GMP) 인증서에 서명한다.

본 명령은 즉시 시행한다.

불기 2556년(서기 2013년) 9월 30일 명령



분차이 솜분숙

식품의약품안전청장